東河館

정 보 공 개 서

동하관온의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동하관온의점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15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 08. 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09. 10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7번길 31, 1층 101호(온의동)

전화번호: 033-255-0888 donghakwan@naver.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 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 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기	지	주 소					
	동하관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7번길 31, 1층 101호(온의동)					
동하관온의	법인 설립등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점	개인사업자 2022. 11. 01 정원선 033-255-0888					-		
	법인등록번호		_	사업자등록번호		483	-27-0145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동하관	-
- 상 호	동하관 00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 다.
상표(서비스표)	東河館の子かり	출원번호(일자): 출원 예정 등록번호(일자): 출원 예정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_	_	_	12, 180	-	-
2022년				218, 569		
2023년				420, 007		

* 2021년의 매출액은 2021.10 영업을 개시한 동하관 직영점(본점)의 매출액이며, 2022~2023년의 매출액은 당사의 2개의 직영점(본점, 온의점)의 매출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는 아직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매출액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판던어무	이름	선 역기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원선	대표	2021. 10. ~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 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의 사용기간)
동하관 (상표권)	가맹점		_		
東河館	운영을 위한 영업표지 등으로 사용	출원 준비중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하관]의 상표권은 현재 출원 준비중인 상태로서 아직 상표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동하관]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년 10월 12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동하관온의 점	동하관	정원선	가맹사업 개시 예정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7번길 31, 1층 101호(온의동)

3. [동하관] 업종

영업표지			업종
동하관	由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등약한		한식	■ 한우 곰탕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동하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TI CH	지역 2021. 12. 31.			2	2022. 12. 31.			2023. 12. 31.		
^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_	1	2	_	2	2	_	2	
서울	-	-	_	-	_	_	-	_	_	
부산	_	_	-	-	_	_	-	_	_	
대구	-	-	_	-	-	_	-	_	_	
인천	-	_	_	-	_	_	-	_	_	
광주	_	_	-	-	_	_	-	_	_	
대전	_	_	-	-	_	_	-	_	_	
울산	-	-	_	-	_	_	-	_	_	
세종	-	_	_	-	_	_	-	_	_	
경기	_	_	_	-	_	_	-	_	_	
강원	1	_	1	2	_	2	2	_	2	

충북	-	_	_	-	_	-	-	_	_
충남	-	-	-	-	-	-	-	-	_
전북	-	-	-	-	-	-	-	-	_
전남	-	-	-	-	-	-	-	-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	_	-	_	-	-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동하관]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_	_	_	-	_	_
2022년	_	-	_	-	_	_
2023년		-	Ī	عر	-	_

^{*}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하관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가맹점사업자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³.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지역		2023년말			매출액	개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 3m²당	상한	면적 3. 3m²당	하한	면적 3. 3m²당		
	전체	_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_	해당없음				
대구	_	해당없음				
인천	_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1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1	해당없음				
강원	1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	1	
전남	_	해당없음	7.1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2			

*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할 예정입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방문 통지 후 소정의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 능합니다.

8. [동하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동하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

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_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동하관]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 9 광고 및 판촉활동]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춘천지점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033-256-606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시거나,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동하관]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033-256-606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 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동하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9, 900				
가입비	8, 8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1, 1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2, 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가맹계약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1, 900
가입비	8, 800
교육비	1, 100
(현금) 보증금	2, 000
7	J EB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²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0, 400	3, 020			66m² (20평) 기준
필수설비 (정착물)		15, 000				66m²(20평)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36, 000	1, 800	공급업체 계약내용에 따름	공급업체 계약내용 에 따름	66m²(20평) 기준
가구		3, 500				66m²(20평) 기준

외부간판 및 내부 싸인 인쇄물		3, 900		66m² (20평) 기준
초도물품 (원· 부자재 포함)		2, 000		66m² (20평) 기준
포스기	(협력업체	_		임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일 것 만18세 이상일 것

^{*}점포 임대비용, 소방공사, 전기증설, 냉·난방, 화장실, 철거, 가스공사, 전면공사, 어닝, 폴딩도어 파사드 및 외부공사 등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동하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가맹점 분납 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정기납입금 (로열티)	당사	월 20 (정액제)		소멸성	소멸성
리스료		해당없음		_	
광고 분담금	당사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분담 (자세한 내용은 V. 9. 1) 참조)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광고활동 미실시	광고활동 미실시
판촉 분담금	당사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활동 미실시	판촉활동 미실시
개점 이후 교육비	당사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교육 전 개별 통지일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당사	정보공개서 W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변경 내용 미이행	변경 후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미지정	정보공개서 Ⅷ-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교체/보수 미이행	교체/보수 후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지연이자	당 사	연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사업

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상품 및 재고관리	상품 및 재고상품의 보관상태 등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당사의 임직원 / 슈퍼바이저
설비관리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문의: 당사

접객 및 교육관리	접객 방법 및 고객 서비스 방법 점검	(033-255-0888)
회계관리	회계장부(포스) 등 경영전반에 관련된 기록 조사(배달 어플리케이션 매출현황 포함)	
레시피관리	매장의 균일한 레시피 관리	
위생관리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사업자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일정 및 내용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재가 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 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 시에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동하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채무(물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 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해당 철거·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치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금 이십만원 (¥200,000)정<부가세 없음>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홍보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 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④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⑦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해 주어 고객이 어느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 의 편의성을 증대 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를 제고 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동하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 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ΔШ	프 및 / C L O I \	공급	가격	그ㅂ
순번	품목(단위)	상한	하한	구분
1				
2				
3				

*당사는 직전년도에 가맹점이 없어 품목별 상한 하한의 정확한 공급가격 내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동하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동하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설비, 장비, 정착물 포함).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 1 -	<u> </u>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2) 당사가 [동하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3	3	5 24		
		계		5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한우곰탕		1회 위반: 구두 경고	
한우양곰탕	인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 품을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한우특곰탕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한우특양곰탕			

한우얼큰곰탕				
한우이공탕				
한우궁중비빔밥				
한우육회비빔밥				
한우만두국(계절메뉴)				
한우물냉면(계절메뉴)				
한우비빔냉면(계절메뉴)				
한우모듬수육(중)				
한우모듬수육(대)				
얼큰모듬수육(중)				
얼큰모듬수육(대)				
한우모듬구이(1인)			ÊB	
한우등심(1인)			居 高	
한우안심(1인)				
한우갈비살(1인)	5	2	51	
한우 불고기	3	3P	高	
한우육회				
횡성산더덕구이				
명태회무침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한우곰탕	13, 000	담당자 방문 및	
한우양곰탕	14, 000	온라인 공지 혹은	2023.04월 기준
한우특곰탕	15, 000	통보	
한우특양곰탕	16, 000		
한우얼큰곰탕	14, 000		
한우이공탕	20, 000		
한우궁중비빔밥	11, 000		
한우육회비빔밥	13, 000		
한우만두국(계절메뉴)	11, 000		
한우물냉면(계절메뉴)	11, 000		
한우비빔냉면(계절메뉴)	11, 000		

한우모듬수육(중)	40, 000
한우모듬수육(대)	60, 000
얼큰모듬수육(중)	40, 000
얼큰모듬수육(대)	60, 000
한우모듬구이(1인)	49, 000
한우등심(1인)	39, 000
한우안심(1인)	45, 000
한우갈비살(1인)	39, 000
한우 불고기	16, 000
한우육회	28, 000
횡성산더덕구이	12, 000
명태회무침	12, 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답장 답게	가맹본부	계열회사	
[동하관]에서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 영업방식 및 형태가 동일한 음식류를 취급하는 업종	동하관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 읍, 면 당 1개의 점포 설치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6 9 9 9 9 9 9 9 9 9 9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도 동시아고 30일 이내에 동 의 여부 회신 도이가 이느 경으 15일 이내에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동하관'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동하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 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동하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 ☐ ☐ ☐ ☐ ☐ ☐ ☐ ☐ ☐ ☐ ☐ ☐ ☐ ☐ ☐ ☐ ☐ ☐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O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O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O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 키지 않은 경우
- [동하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 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 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수시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등에 반영을 위해 문의하는 총매출액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3회** 이상 상품·서비스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 분담 및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점 운영권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된 가맹점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비, 영업허가, 기타 영업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한 상품/서비스의 주문, 품질기준 준수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서비스를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 우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 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 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 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②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계약 내용을 유지합니다.

계약 내용 재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은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문의: 당사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 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교육 비, 계약이행 보증금,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희망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 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법적효력 발생시 가능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 →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본부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승인시 가능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동하관]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동하관]에서 판매하는 상품 및 서 비스, 영업방식 및 형태가 동일 한 메뉴를 취급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동하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1:00]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문의: 당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

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특별한 제한 없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 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가 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분기 1회	본사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주문→친절도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正기 1 <u>기</u>	운영팀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품질확인→관리표작성→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배달어플리케이션	담당자 매장 방문 → POS 및 배달어플리케이션 사용 상태점검→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 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 취급 여부, 상품 정돈 상태, 서비스 제공 실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액, 연 매출액의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점검, 지도, 관리, 감독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인은 본사에서 사전에 제공한 가맹점 관리표(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동하관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ИJ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 급 골시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서면 제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등 (전국 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분담 없음	
	지역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지역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서면 제시)	지역 대중매체 광고 등
	개별광고	없음	전액 부담	분담 없음	가맹점 사업자 단독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 행사계획 중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조로 호 최조보다근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독자적인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전단지, 카탈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당사 브랜드의 통일성 및 대외적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스스로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귀하가 물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 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가 본 계약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받은 금액의 2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는 귀하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 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 상의 경업금지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각각 금 오천만원 정(¥5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당사의 과실 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해지하거나, 점포 양도 등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잔여 계약기간 1 영업일 당 금 오십만원 정(¥500,0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⑦ 가맹점 사업자가 당사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 정(₩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⑧ 귀하가 계약체결 이후 개점 전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초기 가맹금에 서 일정 부분을 상계처리 한 후 반환하게 됩니다.
- ⑨ 양 당사자 간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8%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 ① 그 밖에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홈페이지, 방문 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7~49 -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1~46		본 정보공개서 IV-1 참조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0	., .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3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6~38(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5(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5~34(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위 표의 소요금액은 점포임대 관련 비용,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급·배기 공사, 소방 설비, 냉난방기 및 오디오 구입 비용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당사 및 당사의 지정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정보공개서 내에 제시된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하는 실비 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Ⅲ.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①간판교체 비용 ②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①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20% ②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①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③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①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동하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	·련종류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신규교육	가맹점 운영 교육	행정절차 안내, 개점준비, 교수법 교육, 전산장비 사용법, 점포 경영 등	이론· 실습 병행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개점 후 신규교육	가맹점 운영 교육	실질적 매장 운영 교육	실습 위주 교육	개점 후 실제 운영 장소에서 교육 실시	필수 교육
수시교육	운영교육	신규/특별 영업방침, 신메뉴 교육 등	이론· 실습 병행 (정기)	교육실시 20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요시 협의
특별교육	보수교육	서비스 제고 및 매출 증대 방안, 가맹점사업자 교육요청사항 등	이론· 실습 병행 (비정기)	교육실시 20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요시 협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동하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8시간 X 3일 (24시간)	1 100	최초 계약 시 이수 *비용은 최초가맹금에
개점 후 교육	3시간 X 1일 (3시간)	1, 100	포함 *교육인원이 2명 초과 인 경우 추가비용 발생
수시교육	쳐이	ЛП	- 외부 교육업체/인력
특별교육	협의	실비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가능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의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가맹계약의 해 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점 이후 실시되는 교육(수시교육 등)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물품 공급중단 사유 및 이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사유,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된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을 미준수 하는 경우에도 "교육 불참"으로 간주하여 상기 불이익 발생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메뉴 교육 외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 을 원칙으로 합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강원	동하관 본점	강원도 춘천시 세실로 114-32(석사동)
2	강원	동하관 온의점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7번길 31, 101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_____(단위_: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	
210, 003	20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 한 경우에는 당사(1670-574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 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가맹본부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해당 자료는 직영점 2개점 중, 1개점(동하관 본점)이 2023년 5월 신규 상호 (춘천캠핑식당)으로 변경되어 해당 상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하관 본점에 대한 매출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첨 2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점 5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